

形式名詞와 代名詞에 대하여

양정호 *

1. 머리말

본고는 체언류 중에서 형식명사와 대명사를 대상으로 15세기의 한글 자료와 그 이전 시기의 이두 자료를 통해 고대국어의 모습에 대한 몇 가지 추측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고대국어의 모습이 어떠했을 것인가 하는 것은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확실한 답을 얻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교적 많은 자료가 남아 있는 15세기 자료와 고려시대의 이두 자료를 이용해서 그 이전 단계의 모습을 짐작해 보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 형식명사와 대명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들이 명사의 경우에 비해 체계의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비교적 큰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명사의 경우는 고대국어나 중세국어 그리고 현대국어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주기 어려운 문법범주라고 할 수 있음에 비해 형식명사와 대명사의 경우는 비교

* 박사과정 수료

적 그 체계가 안정적이지 않아 변화의 가능성에 있는 문법범주이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형식명사를 다루게 될 것인데 그 출발점을 '듯'이라는 형태로 잡으려 한다. 이 형태는 흔히 어말어미와 형식명사의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처리되어 왔는데 이는 아마도 15세기 이전의 비교적 이른 시기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 이 아닌가 생각된다. 3장에서는 대명사를 다루게 될 것인데 현대국어와 중세국 어에 대한 기준의 논의들에서 국어는 비교적 대명사가 덜 발달된 언어라는 지적 이 있어 왔다는 점에서 본고는 이러한 현상이 매우 이른 시기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본고를 맺 고자 한다.

2. 형식명사

2.1. 15세기 국어에서의 형식명사

15세기 국어에서 문제가 되는 형식명사는 '듯'이다. 다른 형식명사들은 항상 관형형 아래에만 연결되는데 '듯'은 어간에 직접 연결되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로부터 과거의 어느 시기에는 이들이 동일한 문법범주에 속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추측을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 되는 공식적 검토를 행해 보고자 한다. 우선 15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두 종류의 '듯'의 예를 보기로 한다.

- (1) 鳴呼는 한숨 되듯 혼 겨치라 (월석 서;23a)
- (2) ぐ. 時節이 굽어든 어버미를 일흔듯 혼니라 (월석 서;16a)
ㄴ. 날듯 호더 몬 나미 (능엄 8:41a)

(1)은 어간에 직접 연결된 '듯'이고 (2)는 관형형어미 'ぐ., ぐ.' 아래 연결된 '듯'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어간에 직접 연결되는 '듯'은 어미로, 그렇지 않은 '듯'은 형식명사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상당한 설득

력을 가지는 듯하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물론 어간에 직접 연결되는 ‘듯’과 그렇지 않은 ‘듯’을 동일한 문법 범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의 논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준의 논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말어미 ‘듯’이 아니라 형식명사 ‘듯’이라고 할 수 있는데 ‘ㄴ, 르’ 아래에 나타나는 ‘듯’을 형식명사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형식명사로서의 ‘듯’을 인정하기 어려운 공시적인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 ‘듯’을 형식명사라고 하는 이유가 관형형어미 아래 나타난다는 것이라고 할 때 ‘듯’을 형식명사라고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러한 설명은 논리적으로 순환적인 것이 된다. ‘듯’이 형식명사라고 전제하는 경우에만 선행하는 ‘ㄴ, 르’을 관형형어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듯’의 선행 성분인 ‘ㄴ, 르’은 관형형어미와 형태만 동일할 뿐 이것이 관형형어미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공시적으로 ‘근씨’의 ‘르’을 관형형어미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비교할 때 ‘ㄴ듯, 르듯’에서 ‘ㄴ, 르’을 관형형어미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근씨’의 경우에는 공시적으로 형식명사 ‘ㅅ’가 존재함에 비해 ‘듯’의 경우에는 어간에 직접 연결되는 ‘듯’이 존재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형식명사로서의 ‘듯’의 존재를 의심스럽게 하는 다른 증거의 하나는 조사와의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형식명사 중에는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인 증거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만약 ‘듯’이 형식명사가 아니라 어미의 일부라고 한다면 이는 유용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듯’이 부사어 이외의 다른 어떤 문장 성분으로도 기능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명사로서의 지위를 매우 의심스럽게 하는 증거가 된다.¹⁾

1) 왕문용(1984)에서는 ‘듯’을 부사성 불완전명사로 규정하고 부사적 성격을 다섯 가지로 들고 있다.

- ① 아무런 격조사의 도움없이 부사어로 쓰임
- ② 부사로 대체 가능함
- ③ 부사처럼 이동이 가능함
- ④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비문이 됨
- ⑤ 부사어로만 기능함

또다른 이유 하나는 ‘듯시’의 존재에서 찾을 수 있다. 공시적으로 ‘듯시’를 분석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와는 상관없이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듯’과 ‘이’의 결합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이 때의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듯’이 형식명사라면 ‘이’는 조사이거나 파생접미사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모두 타당하지 않다. 어말어미 ‘듯’에도 연결되므로 조사나 파생접미사일 수 없으며 선행 성분을 부사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점에서도 그렇다. 즉 국어에는 명사를 부사어로 만드는 ‘이’라는 조사를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으며 명사를 부사로 파생시키는 접미사 ‘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낫나치, 균그티, 겹거비’에서처럼 완전명사의 중첩형에서만 나타나므로 ‘듯’에 연결되는 ‘이’를 이와 동일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다음으로 ‘듯’을 형식명사로 처리하기 어려운 통시적 이유를 살펴 보기로 하자. ‘ㄴ듯, ㄹ듯’의 ‘듯’이 형식명사라고 하는 논의는 자체로 상당히 공시적인 것 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문법화라는 역사적 변화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순수하게 공시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형식명사 ‘듯’과 어말어미 ‘듯’이 역사적으로 동일한 형태소인 때가 있었다고 할 때 후자는 전자가 문법화를 겪음으로써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명의 문제는 어째서 형식명사가 단독으로 문법화를 겪었느냐 하는 점이다. 어휘형태소가 문법화를 겪는 경우에는 그 어휘형태소와 빈번하게 결합하는 문법형태소와 함께 문법화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듯’의 경우에는 문법형태소이므로 관형형어미와 함께 문법화하여 ‘ㄴ듯, ㄹ듯’ 전체가 어말어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는 ‘듯’만이 어미로 나타나는 것이다. 항상 ‘ㄴ듯, ㄹ듯’의 형태로 나타나야 할 형식명사 ‘듯’이 왜 단독으로 문법화를 경험하게 된 것인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ㄴ듯, ㄹ듯’에 나타나는 ‘듯’을 형식명사로 볼 수 없는 여러 이유를 살펴 보았다. 이제 남은 문제는 ‘듯’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듯’을 어미의 일부로 보고자 한다. 즉 ‘ㄴ듯’과 ‘ㄹ듯’을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어미로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ㄴ듯’과 ‘ㄹ듯’은 실제로는 별개의 두 어미가 아니라 하나의 어미이며 따라서 어미는 ‘ㄴ듯’ 하나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중 ②, ③, ④는 ①과 관련된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근듯’은 추측법어미 ‘리’와 ‘느듯’이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본고에서는 ‘듯’과 ‘느듯’의 두 어말어미를 인정하게 되는 셈인데 이 들은 그 의미가 다르므로 별개의 형태소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사적으로는 그 기능이 동일하므로 동일한 문법 범주에 소속시켜야 한다. 즉 용언에 연결되어 단어를 끝맺는 기능을 하므로 어말어미라 할 것이고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절을 형성하므로 어말어미 중에서도 부사형어미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식적 처리와는 별개로 통시적으로 이러한 형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15세기 이전에 ‘듯’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15세기 당시의 상태로 공존하게 된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대략 다음의 세 가지 정도가 아닌가 한다.

- 1) 모든 ‘듯’은 기원적으로 형식명사였다.
- 2) 모든 ‘듯’은 기원적으로 어미였다.
- 3) 모든 ‘듯’은 기원적으로 문법범주가 미분화된 상태였다.

1)의 경우에는 형식명사의 어미화라는 문법화를 가정해야 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어휘형태소가 문법형태소 없이 단독으로 문법화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의 경우는 더욱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법형태소가 비문법화 과정을 거쳐 어휘 형태소로 바뀌었다고 해야 하는 때문이다. 이러한 비문법화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3)의 경우는 기원적으로도 ‘듯’이 어간에 직접 연결되기도 하고 관형형어미 아래 연결되기도 했다는 것인데 필자는 이러한 가설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2. 이두에 나타나는 형식명사와 어말어미

15세기 국어에도 상당한 수의 형식명사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들 중에서 어말어미와의 기원적 동일성을 명확히 보여 주는 것은 ‘듯’ 하나 뿐이라고 할 수 있다.²⁾ 따라서 15세기의 공시태만으로는 ‘듯’의 기원에 관해 어떤 설명을 제공해

주는 예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15세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두 표기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2.1에서 제안한 가설에 대해 적절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 태조 4년(1395)에 간행된 『人明律直解』와 고려시대에 간행된 몇몇 이두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³⁾

2.2.1. 『人明律直解』에서의 형식명사와 어말어미

일반적으로 차자표기법이 보수적 성향을 보인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人明律直解』는 비록 1395년에 간행된 것이기는 하지만 고려시대 이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人明律直解』에서는 15세기 한글 문헌에서와 같은 많은 형식명사를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5세기의 ‘돛’과 관련된 어형을 찾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형식명사와 어말어미의 문법범주가 미분화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예들을 얻을 수는 있었다.

(3) ㄱ. 有餘不足爲所無去沙解由文字乙成給爲齊 (7:9a)

ㄴ. 官司亦近有宥旨教所乙聞知爲遣 (28:17a)

ㄷ. 原告人亦中更良對論令是乎所無去等 (28:8b)

(4) 各司亦進來推問次良中隱藏發送不冬爲在乙良 (1:12b)

2) 그러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돛’이 그러한 예이다.

(3) 늠 더브리 득토돌 아니호노이다 (석상11:34)

(4) a. 諸法이 비론 이룸인 둘 아는 衆生 爲호야 (월석 8:29)

b. 釋迦佛 득외심 둘 普光佛이 니르시닝다 (월석 1:3)

(3)은 ‘돛’이 어간에 직접 연결된 것이고 (4)는 ‘돛’이 ‘는’, ‘는’ 아래 연결된 것이다. 구조적 양상은 위에서 살펴 본 ‘돛’과 동일하지만 (4)의 경우에 ‘는’의 명사성이 너무도 분명하다고 하는 점이 문제이다. ‘돛’은 형식명사 ‘는’과 목적격조사 ‘는’의 결합임이 틀림없어 보이는 것이다. 또 (3)의 ‘돛’ 또는 ‘는’과 (4)의 ‘돛’ 또는 ‘는’가 동일한 기원을 가진 형태라고 하는 점도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실제로 두 형태의 기원이 같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보면 상당히 그럴 듯한 것이다. 사실로 (3)의 경우에도 ‘는’은 명사형어미로, ‘는’은 목적격조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3) 고려시대 이두자료의 경우는 이승재(1989)에서 행해진 해석을 이용하기로 한다.

(3ㄱ)은 ‘所’가 동사 어간에 직접 연결된 예이고 (3ㄴ)은 ‘所’가 선어말어미 ‘教’에 직접 연결된 예로 모두 어말어미의 범주에 속할 것으로 생각된다. (3ㄷ)은 관형형어미 ‘乎’ 아래 ‘所’가 연결된 것으로 형식명사라고 할 것이다. ‘所’는 15세기의 형식명사 ‘바’에 해당하는 형태인데 여기서는 관형형어미 아래가 아닌 환경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5세기의 ‘듯’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4)는 ‘초’로 음독되는 형식명사인데 관형형어미 아래 연결된 예는 없고 항상 어간에 직접 연결되지만 한다. 한정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을 뿐 관형형어미 아래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 보인다.

이상의 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15세기에는 형식명사로만 사용되는 형태가 《大明律直解》에서는 어미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형식명사와 어말어미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2.1에서의 논의와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

2.2.2. 고려시대 이두에서의 형식명사와 어말어미

《大明律直解》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이두에서도 15세기 이후처럼 많은 수의 형식명사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아마도 자료의 부족이 그 원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그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예들이 없지 않다. 15세기 문헌에서는 관형형어미 아래에서만 나타나는 형식명사들이 어간에 직접 연결되기도 하는 예들이 있는 것이다.

(5) ㄱ. 其中父祖別爲所有在員等乙良 (尙書都官貼 14)

ㄴ. 王室乙廢殆令是白乎所無齊 (尙書都官貼 81)

(6) ㄱ. 事是次 (松廣寺奴婢文書 3)

ㄴ. 焚修祝聖爲白臥乎次是在亦 (長城監務官貼文)

위의 예는 이승재(1989)에서 일부를 옮겨온 것이다. (5ㄱ)과 (6ㄱ)은 ‘所’, ‘次’가 어간에 직접 연결된 것이고 (5ㄴ)과 (6ㄴ)은 관형형어미 아래 연결된 것이다. 《大明律直解》에서와 같은 예들인데 ‘次’가 관형형어미 아래 나타나는 예도 있

음이 다르다. 각각의 (ㄱ)과 (ㄴ)은 동일한 기원을 가진 것이 분명하므로 15세기 국어에 나타나는 ‘듯’과 완전히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예들에서 형식명사와 어말어미의 미분화를 확인할 수 있다.

2.3. 요약

이상에서 형식명사라는 문법범주가 중세국어 이전의 어느 시기에는 독립적인 범주로 존재하지 못하고 어말어미라는 문법범주와 미분화된 범주로 존재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다른 문법범주들의 관계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관형형어미와 명사형어미가 그 기능상 완전히 구분되지 않았던 시기가 존재했음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중세국어의 명사와 관형사도 엄밀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 이전에는 각각을 독립된 문법범주로 보기 어려운 때가 있었으리라는 생각도 일반적인 듯하다. 본고에서는 형식명사와 어말어미의 경우도 이러한 예들과 동일한 성격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주장한 것이다. 추측컨대 고대국어 단계에서는 이처럼 미분화된 문법범주가 더욱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대명사

일반적으로 국어에는 대명사가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특히 삼인칭대명사의 경우는 중세국어는 물론 현대국어의 경우에도 흔히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이 장에서는 15세기 이전의 자료에서 대명사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국어의 대명사가 중세국어 이전의 시기에서도 발달하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해 추측해 보고자 한다.

3.1. 《大明律直解》에서의 대명사

《大明律直解》에 나타나는 대명사는 ‘吾, 其, 自己, 自, 已, 自中, 此, 彼’의 8개 형태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吾’는 일인칭대명사로 이해되었고 ‘其, 自己, 自, 已, 自中’은 재귀대명사로 이해되었으며 ‘此, 彼’는 지시대명사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大明律直解》에 나타나는 대명사는 일인칭대명사, 재귀대명사, 지시대명사의 세 종류뿐인 것으로 생각되었고 이런 이유로 해서인지 체계적으로 대명사를 기술하려는 시도조차 거의 발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大明律直解》가 법률집이라고 하는 점에 근거해서 생각할 때 일인칭대명사와 이인칭대명사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인칭대명사만이 나타난다는 것이 의심스럽고 지시대명사 중에서 근칭과 원칭은 나타남에 반해 중칭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의심스럽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의심을 출발점으로 개개의 대명사가 나타나는 이두 문을 면밀히 검토함과 아울러 한문 원문과의 대조를 통해 각 대명사의 기능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大明律直解》의 대명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3.1.1. 인칭대명사

3.1.1.1. 일인칭대명사

《大明律直解》에서 나타나는 ‘吾’는 흔히 일인칭대명사로 이해되었으나 법률집인 《大明律直解》에 일인칭대명사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다. 실제로 《大明律直解》에 나타나는 모든 ‘吾’는 재귀대명사 ‘자기’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결국 《大明律直解》에는 일인칭대명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3.1.2.3. 참조).

3.1.1.2. 이인칭대명사

《大明律直解》에는 대화체 문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인칭대명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실제로도 나타나지 않는다.

3.1.1.3. 삼인칭대명사

《大明律直解》의 경우 그것이 간행된 시기는 태조 4년(1395)이지만 이두라는 보수적인 표기 방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간행된 시기보다는 앞선 시기의 언어 현실을 부분적으로라도 보여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大明律直解》에 나타나는 대명사 체계 역시 15세기 이후의 체계와 동일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大明律直解》의 이두 연구서들의 대부분은 15세기 이후의 대명사 체계에 이끌린 탓인지 ‘其’를 ‘자’로 해석하여 재귀대명사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자료를 엄밀히 살펴보면 재귀대명사로 보기보다는 삼인칭 대명사로 보는 것이 타당한 예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그 수 또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1) 其婦人亦 大家良中 得罪爲彌 義絕爲去等 被黜爲良置 其矣 予矣 官職 品次以 同論 (1:15a)
- (2) 不喻在人亦 祖父母 父母戈只 年老有病是遺 犯斤 侍病 男丁 無在乙良 其矣 所犯罪名乙 開坐 中聞 伏候 上決齊 (1:19b)
- (3) 趣便以 宮城內 及 宮殿門內良中 直人爲彌 --- 遊役在逃爲彌 犯姦爲在乙 良 無首從爲 各各 其矣 所犯以 正犯良中 論爲乎事 (1:33b)
- (4) 奴婢身役人亦 家長乙 容隱爲在乙良 幷只 勿論罪齊 其矣 犯罪 親屬乙 官司亦 推捉爲?去等 其事乙 通消息 --- (1:38a)
- (5) 邊者乙良 舉選官員 及 其矣 所犯隱諱爲在人 等乙 各杖 一百 停職 不用爲乎事 (2:4b)
- (6) 父之間生姊妹矣 夫果 其矣 妻男果 (1:12a)
- (7) 重罪乙 輕罪是乎 樣以 中報爲在乙良 其矣 減數內剩 餘罪數以 決罪齊 (2:7b)
- (8) 有官職人果 宰民之家亦 妻 及 女子 等乙 各寺社神廟良中 發送 燒香爲在乙良 答 四十爲乎矣 其矣 夫 及 子乙 與罪遣 (11:3b)
- (9) 過行人果 他矣 牛馬付行狀以 其矣 牛馬持是彌 (15:1b)
- (10) 子孫之婦乙良 其矣 嫁時 持來 衣裝乙 生微還給爲彌 (20:14b)
- (11) 凡 委任捕盜官亦 賊徒乙 執捉爲 其矣 偷取贓物乙 漏落 官司輸送不冬爲在乙良 答 四十齊 (23:7a)
- (12) 凡 典獄令史獄卒等亦 囚人乙 教誘爲 其矣 罪狀乙 反作變亂令是彌 (28:4b)

위의 예들의 밑줄 친 ‘其’는 재귀대명사 ‘자기’로 해석되기보다는 ‘그나 ‘그녀’ 정도로 해석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특히 예문 (1, 2, 3, 4, 7, 8)는 ‘其’의 선행사로 해석될 성분이 모두 ‘其’와는 다른 절에 있으므로 ‘其’가 재귀대명사라면 절 경계를 넘어서 대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재귀대명사와 선행사는 동일한 절에 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예문 (5, 6, 9, 10, 11, 12)는 선행사가 주어여야 한다는 조건을 어기므로 재귀대명사일 수 없다. (5, 10)의 ‘其’는 주제와 공지시하고 있고 (6, 11, 12)의 ‘其’는 목적어와 공지시하고 있고 (9)의 ‘其’는 관형어와 공지시하는지 아니면 목적어와 공지시하는지가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주어가 아닌 성분과 공지시하고 있다.

이상의 세 근거에 비추어 위의 예문에 나타나는 ‘其’는 기존의 논의에서 이해한 것과는 달리 재귀대명사가 아니라 삼인칭대명사임이 틀림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3.1.2. 재귀대명사

《大明律直解》에 나타나는 재귀대명사로는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自己, 自, 其’ 이외에 흔히 일인칭대명사인 것으로 생각해 왔던 ‘吾’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1.2.1. 自己

재귀대명사 ‘自己’에는 단수형뿐 아니라 복수형이 나타나며 ‘自己’의 이형태인 것으로 생각되는 ‘自, 己’가 나타난다.

(가) 단수

1) 自己

(13) 凡 田宅乙 盜賣 回換爲彌 自己 田宅是如 妄稱爲彌 (5:4a)

(14) 因此爲 囚人亦 在逃爲彌 自己乙 害傷爲彌 (28:4a)

(15) 囚人乙 遷慢 檢察 所致以 囚人亦 自己 罷命 死亡爲在乙良 (28:4a)

2) 自

(16) 凡 官文書乙 加減爲在乙良 杖 六十齊. 自矣 身上 杖罪乙 謂避爲要爲在

乙良各 加本罪二等爲乎矣 (3:9b)

(17) 自以 省覺現告爲在乙良 (1:35a)

3) 己

(18) 犯人矣 己身分 坐罪爲乎事 (1:12b)

(19) 彼國人亦 己 招服 杖 六十 罪乙 通事亦 饒譯爲 杖 一百 罪良中 加作爲在乙良 (28:10a)

(나) 복수

(20) 同居奴婢 及 傭役人亦 家長矣 財物乙 偷取爲彌 自中 互相 偷取爲在乙良 (18:11a)

3.1.2.2. 其

흔히 재귀대명사라고 생각되어 온 ‘其’ 중에서 삼인칭대명사인 것이 있음은 2.3.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3.2.에서는 지시대명사로 해석되는 ‘其’가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삼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로 해석되는 ‘其’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재귀대명사로 생각되는 것만을 보인다.

(21) 強盜 竊盜 等亦 其矣 同黨乙 執捉 付官爲在乙良 (1:29b)

(22) 官員 書吏 令史 等亦 其矣 所犯事 發露爲去 聞知爲遺 (3:8b)

(23) 當時 相爭 未決 田宅 及 他矣 田地 家產乙 其矣 田產是乎 樣以 勢處良中 許上爲在乙良 (5:4a)

(24) 其矣 女乙 財物 受用遺 他人亦中 典賣爲在乙良 (6:3a)

(25) 爲從者乙良 各 減一等遺 未施行者乙良 又 各 減一等齊 其矣 事乙 回避 爲要爲在乙良 其事 重則 從重 論罪齊 (24:1b)

(26) 付囑枉法事亦 罪重爲在乙良 官吏乙 故出入人罪例以 論齊 他人 及 親族人 等矣 所請以 付囑爲在乙良 減官吏罪 三等齊 其矣 身上事乙 付囑爲在乙良 加本罪 一等齊 (26:2b)

(27) 凡 失火爲 其矣 家舍乙 燒亡爲在乙良 答 四十 (26:3b)

(28) 凡 放火爲 其矣 家舍乙 故只 燒亡令是在乙良 杖 一百齊 (26:4a)

(29) 凡 監臨官吏 等亦 其矣 物色等乙 官司良中 挾帶造作爲在乙良 杖 六十齊 (29:3a)

예 (21, 23)은 선행사가 복수이지만 재귀대명사는 단수와 동일한 형태로 나타

나 있다. 예 (28, 29, 30)의 ‘其’는 한문 원문의 ‘自己’에 해당하는 것이다.

3.1.2.3. 吾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혼히 일인칭대명사로 생각되어 왔던 ‘吾’는 실제로는 재귀대명사이다.

- (31) 舀矣 同姓三寸少爲母果 異姓三寸少爲父果 異姓三寸少爲母 等矣 所生乙
交嫁者 杖 八十 幷只 離異 (65b) (若娶己之姑舅兩姨姊妹者杖八十并離異)
- (32) 適母果 繼母果 養母果 親母果亦 舀矣 父乙 殺害爲彌 (22:9b) (適母繼母慈母所生母殺其父)
- (33) 他矣 物色乙 舀矣 物色是如 云彌 (18:12a)

위의 예들에 나타나는 ‘吾’는 ‘나’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자기’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1)은 ‘交嫁’와 ‘者’ 사이에 ‘爲乎’ 정도를 보충하면 관계절로 이해되는 문장이므로 관계절 내의 주어 자리에는 ‘者’가 있었던 것으로 가정하여 통사적인 공범주를 상정할 수 있으며 이 때 ‘吾’는 그 공범주를 선행사로 하는 재귀대명사로 해석된다. 한문 원문의 ‘己’에 해당한다. (33)의 경우에도 ‘云’의 주어를 상정하여 해석할 수 있다. (32)의 경우에는 주어인 ‘適母果 繼母果 養母果 親母’가 선행사로 해석되므로 ‘吾’는 재귀대명사임이 분명하다.

3.1.3.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는 근칭, 중칭, 원칭이 모두 있어야 제대로 갖추어진 체계를 세울 수 있을 것이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중칭의 대명사가 없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어서 체계를 세우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其’가 지시대명사로 해석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근칭의 ‘此’, 중칭의 ‘其’, 원칭의 ‘彼’가 존재한다면 정연한 지시대명사 체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3.1.3.1. 근칭

- (34) 適母 義母 慈母 養母亦 故殺爲在乙良 各 加一等爲乎矣 因此 絶嗣令是在乙良 紓死齊 (20:14a)
- (35) 因此爲 囚人亦 在逃爲彌 自己乙 害傷爲彌 (28:4a)
- (36) 從使人等矣 家口置 此樣以 使內齊 (1:16b)
- (37) 此亦中 犯罪 事發後良中 在逃爲在乙良 (1:36b)

3.1.3.2. 중칭

- (38) 基婦人亦 大家良中 得罪爲彌 義絕爲去等 被黜爲良置 (1:15a)
- (39) 公事乙 用良 斥革爲在乙良 答杖 已上乙 幷只 勿論遺 若 基事亦 錢糧乙
埋沒令是彌 官物乙 (1:15b)
- (40) 基事亦 未發前良中 (1:35a)
- (41) 同僚官亦 幷只 坐罪爲乎 罪犯乙 其中 一人亦 自以 省覺現告爲在乙良 他
餘人乙 幷只 免罪齊 (1:35a)
- (42) 傷而不死爲 騎持不得爲彌 猪羊乙 打殺爲在乙良 其矣 生時 價本良中 故
失後 減爲在 數乙 計爲 盜賊 例以 推論遺 (16:4a)
- (43) 凡 本來 觸抵咬入爲臥乎 馬 牛 及 犬 等乙 其矣 性惡名號乙 說道 不冬
爲彌 (16:6a)
- (44) 彼國人矣 罪狀乙 加減爲 傳說爲在乙良 其矣 加減之罪以 通事乙 坐罪齊
(28:10a)

위의 예에서 보이는 '其'는 모두 삼인칭대명사나 재귀대명사로 해석될 수 없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44)의 경우 '其'가 삼인칭대명사나 재귀대명사라면 그와 공지시관계에 있을 수 있는 명사는 '通事'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뒤에 다시 '通事'가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 따라서 '其'와 공지시관계에 있는 것은 '罪狀'이라고 보아야 하고 결국 '其'는 지시대명사로 이해되어야 한다.

3.1.3.3. 원칭

- (45) 本國乙 背叛爲遣 彼國乙 潛通 (1;4b)
 (46) 彼國人矣 罪狀乙 加減爲 傳說爲在乙良 (28;10a)

3.1.4. 요약

이상에서 《大明律直解》에 나타나는 ‘吾, 其, 自己, 自, 已, 自中, 此, 彼’의 8개 대명사를 대상으로 대명사 체계를 세우기 위해 각 대명사를 이두문과 한문 원문에서 재검토함으로써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그 하나는 흔히 일인칭대명사로 생각해 왔던 ‘吾’가 실제로는 재귀대명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흔히 재귀대명사로 생각해 왔던 ‘其’가 재귀대명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삼인칭대명사와 근칭의 지시대명사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大明律直解》의 대명사 체계를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다.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일인칭	이인칭	삼인칭	재귀대명사	근칭	중칭	원칭
단수			其	自己(自己), 其, 吾	此	其	彼
복수				自中			

3.2. 고려시대 이두에서의 대명사

이승재(1989)에 따르면 고려시대 이두 자료에서 확인되는 대명사는 세 종류 뿐이다. ‘矣(矣身, 矢徒等)’, ‘其’, ‘此’가 그것이다. 각각에 해당하는 예를 하나씩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 (47) ㄱ. 所生奴巾三矣身以矣亦中仰使內如乎在乙 (松廣寺奴婢文書 9)
 ㄴ. 矢身亦出父矣許與論當更良 (南氏奴婢文書 8-10)
 (48) ㄱ. 右人矣戶口基矣族徒以施行 (高麗末戶籍文書 다섯째쪽 13)
 ㄴ. 基矣出子奴龍萬亦中 (南氏奴婢文書 7)

(49) 此亦中父祖別爲所 (尚書都官貼 59)

(47)은 일인칭대명사, (48)은 재귀대명사, (49)는 지시대명사로 해석하였는데 전후의 문맥이 없어 분명하지 않으나 (48ㄴ)의 경우 삼인칭대명사일 가능성에 있지 않나 하는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어쨌든 《人明律直解》에서 보였던 대명사에 비해 매우 적은 양의 대명사밖에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체계를 세우기조차 힘들 정도이다.

삼인칭대명사와 재귀대명사 그리고 지시대명사에 대한 이상의 결과를 《人明律直解》에서의 결과와 비교해 보기로 하자. 우선 삼인칭대명사의 경우 존재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는 있었으나 이승재(1989)의 해석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점이 《大明律直解》와 다르다. 재귀대명사의 경우는 《人明律直解》만큼 많지는 않지만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시대명사의 경우는 근칭만 확인되고 중칭과 원칭의 대명사가 없는 것이 특이하다. 근칭이 확인되는 만큼 나마지도 존재했을 가능성은 큰 것으로 생각된다.

3.3. 요약

이상에서 이두 자료에서 나타나는 대명사들을 검토해 보았다. 《人明律直解》의 경우에는 삼인칭대명사를 비롯하여 재귀대명사와 지시대명사들이 매우 체계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이두 자료들에서는 삼인칭대명사의 존재도 불확실했고 지시대명사의 예도 근칭만 발견되었다. 재귀대명사는 여기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맷음말

2장에서는 15세기 국어의 ‘듯’을 출발점으로 하여 《人明律直解》와 고려시대 이두 자료들에서 형식명사라는 문법범주의 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형식명사들이 어간에 직접 결합되는 예들이 ‘듯’ 이외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로부터 형식명사와 어말어미의 문법범주가 미분화된 시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3장에서는 국어는 대명사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현대적 시각에서 출발하여 과연 그것이 고대국어 단계에서부터 즉 원래부터 국어에는 대명사가 발달되지 않았었나 하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大明律直解》에서는 비교적 발달된 대명사 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고려시대의 이두 자료에서는 그러한 체계적인 대명사의 발달을 발견할 수 없었다. 특히 국어의 경우 삼인칭대명사의 발달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이 역시 《大明律直解》에서는 확인되었지만 다른 이두 자료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大明律直解》의 문헌 성격이 한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면 고대국에서도 《大明律直解》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대명사 체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그러한 추측은 어려워 보인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긴 하지만 본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국어의 삼인칭대명사의 경우 성의 구분에 따라 대명사가 따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고대국어의 경우에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두 자료에서도 이러한 구분이 반영된 대명사는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고영근(1970), <현대국어의 준자립형식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3-1.
 _____(1981),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탑출판사.
 _____(1982), <중세국어의 형식명사에 대하여>, 《어학연구》 18-1.
 고정의(1992), <대명률직해의 이두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
 김정아(1984), <15세기 국어의 대명사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62.
 박희숙(1985), <대명률직해의 이두 연구>, 명지대 박사학위 논문.
 안병희(1985), <대명률직해 이두의 연구>, 《규장각》 9.
 왕문용(1984), <부사성 불완전명사고>, 《국어교육》 49·50.
 _____(1988), <후기 근대국어의 의존명사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이승재(1989), 『고려시대의 이두』, 태학사.
- 이익섭(1978), <한국어의 재귀대명사에 대하여>, 『인문논총』 2(서울대).
- 이주행(1986), <불완전명사에 대한 연구>, 『국어학 신연구』, 텁출판사.
- _____ (1987), <한국어 의존명사의 통시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 임동훈(1991), <현대국어 형식명사 연구>, 『국어연구』 103.
- 임홍빈(1987), 『국어의 재귀사 연구』, 신구문화사.
- 정호원(1983-7), <의존명사의 줄곡어미 형성고>, 『국어국문학』 90.
- _____ (1983-7), <국어 대용언에 대한 고찰>, 『인문과학연구』 2(대구대).
- _____ (1984), <의존명사의 문법 기능어 형성고>, 『유창균박사환갑기념논문집』.
- _____ (1985), <의존명사의 조어론적인 양상>, 『인문과학연구』 3(대구대).
- _____ (1986), <중세국어의 의존명사 연구>, 『인문과학연구』 4(대구대).
- _____ (1987), <중세국어 의존명사의 문법 기능>, 충남대 박사학위논문.